

##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

2002.12월말 결산법인인 2003.3.31. 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### 재무제표 서식변경

- 종전의 요약 재무제표는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불 일치하여
- 재무제표의 이중작성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많았음
- 이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로 개정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
- 단일 서식인 요약원가명세서도 6종으로 확대하여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재무제표 작성을 쉽게 개선하였습니다.
- ☞ 2002.1월말 법인부터 시행 중이므로 이번 신고시에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 법인세율 인하

- 2002.1.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%p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.

과세표준	개 정
1억원 이하분	15%
1억원 초과분	27%

### 특별부가세 폐지

- 종전에는 토지·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외에 15% 세율의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었으나,
- 2002.1.1이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- 한편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(법인세법 제55조의 2)가 신설되었으나
- 과세대상지역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.

###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

- 회수기일 6월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
-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###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

- 종전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사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상각범위액의 1/2을,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었으나
- 2002.1.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###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

-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
- 2002. 12.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.
- 따라서,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,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됩니다.

###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

- 수도권인의 경우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만 20%(도·소매의로업 등은 10%)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
- 2002.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수도권내 중소기업 중 지식기반산업도 20%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### <지식기반산업>

엔지니어링사업, 연구및개발업, 부가통신업,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

※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서 서울?인천?경기도 전체지역을 말합니다.

### 투자관련 유의사항

-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%에서 10%로 상향조정되었고,
-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%로 추가되었으며,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%를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, 2000.6.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###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

- 2002.12.31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됩니다.
- 따라서 금년에 신고하면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자료제공 및 문의  
국세청 납세홍보과(02-397-1397)  
E-mail : ho25400@nts.go.kr